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 - 19호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26.

임실군의회의장



임실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왕중 의원 대표발의)

1. 제 안 이 유

임실군 이·미용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관내 우수 이·미용인 발굴과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더불어 이·미용 서비스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가.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이·미용서비스산업 교육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다.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라.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 고 자 료

- 가.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집행부 의견조회

라. 입법예고 : 2024. 4. 26 . ~ 5 . 1.(5 일간)

마. 기 타

1) 제정 조례안

2)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임실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미용서비스 관계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교육·훈련·연구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
4. 임실군 지역축제 참가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미용서비스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 라.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임실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